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94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소희·박덕흠

최수진 · 송석준 · 서명옥

서천호 • 고동진 • 장동혁

백종헌 · 강대식 · 주호영

임종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)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4(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의 운영 등)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,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 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의 기준 및 계획 수립의 시기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5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56조의4(조류충돌사고 방지 전
	문인력의 운영 등) ① 공항운
	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
	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
	운영하여야 하며, 공항별로 지
	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
	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
	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운
	영의 기준 및 계획 수립의 시
	기・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
	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9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</u>	7. 제5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
	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
	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
	<u>아니한 자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